

1. 개정이유

주택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 사업의 신설 등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내 부서 간 업무를 보다 균형있게 조정하는 등 지원단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장의 조정(안 제4조)

신설된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 사업과 전세사기피해자 조사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조사지원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서울 지역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업무는 전세피해조사과에서 담당하도록 부서간 업무를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접수된 건에 한한다. 다만”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결정 및 경·공매”를 “경·공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공매 유예 조치(긴급)를 위한 피해사실 조사결과의 검증 및 검토의견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조사에 관한 사항
7.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무분장) ① (생 략)</p> <p>② 피해지원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 략)</p> <p>4. <u>전세사기 피해자 조사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u></p> <p>5. ~ 12. (생 략)</p> <p>③ 전세피해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서울특별시</u>를 제외한 지역에서 접수된 건에 한한다. 다만, 관할 지역의 구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④ <u>조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u>서 접수된 건에 한한다. 다만, <u>관할 지역의 구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u></p>	<p>제4조(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5. ~ 12. (현행과 같음)</p> <p>③ 전세피해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다만</u>-----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④ <u>조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추가 조사 등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결과에의 검증 및 검토의견의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조사

나. 이의신청의 접수 및 재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의 조사, 대상자 소명의견 등의 검토

2.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위원회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시·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 등에 관한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사당국, 금융기관 등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6. (생략)

<신설>

1. 경·공매 유예 조치(긴급)를 위한 피해사실 조사결과에의 검증 및 검토의견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조사에 관한 사항

2. 경·공매 -----

<삭제>

<삭제>

5.·6. (현행과 같음)

7.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 및 관

<신 설>

리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
한 사항

8.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
한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 모
니터링에 관한 사항